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이덕수 의원 등 10명

나. 의안번호 : 제 2678호

다. 제 안 일 : 2012. 11. 12.

라. 회 부 일 : 2012. 11. 20.

2. 제안 이유

-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을 집행부 직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 의회 각 위원회에 실무 중심의 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그 직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보건국”을 “교육문화환경국”으로 개정 (안 제3조제2항제3호 나목)

- 제11조 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각항 중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이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께서 2012.11.12. 발의하여 2012. 11. 20.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7인 이상)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의안으로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의안입니다.
- 또한, 본 개정조례안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첨 자료와 같이 시·도 및 경기도내의 일부 시·군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도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을 가지며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개회시간 결정, 의사일정작성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10조)라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 간사는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여 위원회의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과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동 조례 제11조)라고 하여 위원장의 직무대리의 범위는 위원장의 일반적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부위원장”이란 용어의 사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 “복지보건국“을 ”교육문화환경국“으로 개정하고자함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명칭 개정에 따라 당해 위원회 소속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시·도 의회별 간사 개정 현황

계	간 사	부위원장
17개 시·도	3개 시·도 (경기도, 부산·광주광역시)	14개 시·도

□ 경기도 내 시·군 의회별 간사 개정 현황

계	간 사	부위원장
31개 시·군	25개 시·군	의정부시(2007.10. 8) 고양시(2008. 6. 5) 안양시(2008. 9.30) 시흥시(2010.12.10) 오산시(2011. 1.10) 김포시(2011. 9.30)